

『구미시 명상체험관 운영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시민과 공무원에게 명상과 수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및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은 물론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구미시 명상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적용범위(안 제3조)
 - 명상체험관 이용범위를 시민과 시 산하 공무원으로 함
- 명상의 종류(안 제4조)
 - 자연명상체험, 이미지 및 릴렉스 명상체험
 - 디톡스 명상체험, 자세 및 좌선 명상체험
- 관리책임 및 운영(안 제5조)
 - 책임관리 : 정책혁신담당관실
 - 관리사항 : 체험관의 각종 시설물, 비품 등
 - 근무자 : 무기계약근로자, 기간제근로자,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구미시민 등
 - 예산지원 : 자원봉사자 근무복, 급량비 등 예산의 범위내 지원
- 이용시간(안 제7조)
 - 하절기 : 09:00~21:30
 - 동절기 : 09:00~20:30
 - 토요일 : 09:00~18:00

○ 입장제한(안 제8조)

- 음주자, 소란을 피우는 자, 정신이상자, 전염병 질환자, 7세 미만의 어린이
-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자

○ 사용료(안 제9조)

- 체험관 사용료는 무료로 함

○ 사용자의 의무(안 제10조)

- 사용자가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관리의무 소홀로 분실, 훼손 또는 파손 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조치

4. 참고사항

○ 입법예고 결과 (예고기간 '08.3.19~4.8)

- 의견접수 : 1건
- 검토결과 : 반영조치 (조문수정)
 - 제5조(관리책임 및 운영)제2항의 명상체험관 근무자 선발을 일시사역인부, 공공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수정
 - 2009년부터 공공근로사업 불투명(노동복지과, 총무과 협의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

- 시민과 시 산하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명상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 임

○ 주요 제정내용은

- 조례를 총 12조로 규정하면서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목적, 위치 및 명상체험관의 적용 범위를 구미시민과 시 산하 공무원이 이용토록 하고, 안 제4조는 명상의 종류를 규정하였으며
- 안 제5조는 체험관 관리 책임을 정책혁신 담당관으로 하고, 체험관 근무자를 무기계약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선발하여 관리하고 자원봉사자의 근무복 및 급량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
- 안 제6조 내지 제9조는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, 이용시간은 하절기 09:00~21:30, 동절기 09:00~20:30까지로 하되, 음주자, 정신이상자 등에게는 입장을 제한토록 하였으며
-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는 사용자의 의무와 준용 근거 등을 규정 하였음

○ 조례안 검토결과 재검토 사항은 4가지입니다

첫번째 명상체험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

- 안 제3조 명상체험관의 이용범위를 「시민과 시 산하 공무원」으로 규정한 것은 관내 타 부처 공무원들과의 형평성과 시 산하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상체험관 이용범위를 「구미시 거주자 및 관내 직장의 재직자를 우선 한다」로 수정하여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

두번째 관리책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

- 안 제5조 제1항 명상체험관의 관리책임을 「정책혁신담당관 책임 하에 행정혁신담당」 이 관리토록 규정하였으나 「담당」은 직제가 아니므로 「행정혁신담당」을 삭제하고 체험관 관리를 「정책혁신담당관 책임 하에 둔다」로 수정함이 타당하며
- 안 제5조 제2항 「무기계약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 근무하게 할 수 있다」라고 규정한것은 기 제정 운영중인 「구미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」에 의거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정수채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5조 제2항을 삭제함이 타당합니다
- 또한 안 제5조 제3항 「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복, 급량비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」한것은 근무복 및 급량비는 일반운영비로서 해당부서에서 자체예산을 편성 집행이 가능하므로 안 제5조 제3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

세번째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

- 안 제7조의 명상체험관 이용시간을 하절기 09:00~21:30분, 동절기 09:00~20:30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미시 관내 시설물인 시립도서관, 근로자종합복지회관, 민방위교육장 등 대다수 시설물의 이용시간은 하절기 09:00~22:00, 동절기 09:00~21시까지 확대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용시간을 관내 시설물 이용시간과 같이 동일되게 조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가 요구됨

네번째 화장실 이용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

- 명상체험관의 화장실은 13.5㎡(4.1평)로서 남녀 구분없이 출입구가 동일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 어린학생과 여성들에게는 수치심 등으로 사용을 기피할 우려가 있음. 일과후 야간 이용자들의 안전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 체험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